

대구예술대학교 영상&공연 콘텐츠 연구소 규정

(제정 2010.03.23. 교무위원회)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영상 및 공연문화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과 함께 극영화, 단편 영화,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물, 연극, 뮤지컬 등의 공연물, 메이크업(분장) 제작 및 발표, 교류 등을 통하여 지역의 영상, 공연문화 활성화와 발전 및 각 분야별 문화예술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명칭) 본 연구소의 명칭은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“영상&공연콘텐츠연구소”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고 한다.

제3조 (소재) 본 연구소는 대구예술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(1) 극영화, 단편영화,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물 제작, 발표 및 자료집 발간
- (2) 연극, 뮤지컬 등의 공연물 제작, 발표 및 자료집 발간
- (3) 메이크업(분장) 발표
- (4) 상기 (1)(2)(3)에 관련된 세미나 및 초청강연회와 자료집 발간
- (5) 타 연구기관과의 학,예술적 교류 및 자료집 발간
- (6) 각 기관, 단체와 협력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
- (7) 산학공동 기획물 제작
- (8) 영상 및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
- (9) 그 외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직

제5조 (연구원) 연구소의 연구원은 대구예술대학교 방송연예학과 교,강사 및 관련업종의 외부인으로 구성한다.

제6조 (특별연구원) 소장은 전 제5조 이외의 자라도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특별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 (임원)

- (1)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
 - ①소 장 : 1명
 - ②부 소 장 : 1명
 - ③간 사 : 1명
 - ④운영위원 : 각 분야별 약간 명
 - ⑤감 사 : 1명

(2)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연구원, 조교,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 (임명 및 임기)

- (1)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(2) 부소장, 운영위원,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(3)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9조 (임무)

- (1)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.
- (2) 부소장은 소장 부재 시 소장을 대신한다.
- (3)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- (4)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.
- (5) 감사는 연구소의 일반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며, 그 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 3 장 회의

제10조 (운영위원회)

- (1) 운영위원회는 소장, 운영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- (2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- ③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 - ④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(3)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
- (4)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과반수의 찬선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정

제11조 (경비)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충당한다.

- (1) 입회비 및 월회비
- (2) 대구예술대학교 연구 보조금
- (3) 개인이나 단체의 연구 보조금
- (4) 기타 수입

제12조 (연구비) 연구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, 창작지원금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 (예산 및 사업계획) 소장은 매년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 (결산 및 사업보고) 소장은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